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05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
- (3) 회 부 일 : 2024. 1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사·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¹⁾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개요)²⁾.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

1) 가장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는 2023년으로, 2028년 다음 전수조사 실시 예정임.

2)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내 ‘복지지도’를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³⁾

-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연동함.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화면>



3)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지도.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ca/wfcl/wfclPage.do>

※ 복지로 내 화면 표기 내용 (픽토그램 표기 사례)

○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건물로써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

○ 편의시설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이용가능 출입문	장애인 객실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녹색)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

-  (주황색) 건물의 구조, 지형상 문제 등으로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설치되어 있음.
편의시설 유형에 따라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과 관련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등의 생활상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운영하는것은 일정 규모의 초기 구축비,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바,

그 타당성, 실현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동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이에 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에 추가되는 기능 또는 서비스의 내용,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⁴⁾

-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운영」 사업을 통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국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운영,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시스템 연계 및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44억 6,300만원임.⁵⁾

□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⁶⁾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103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추계번호: 24C5568)

5) 현재 세움터 건축물대장에는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특정하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음.

6) 개정안 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현재 복지로(복지지도)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적합성 확인 여부를 대장에 반영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건축법」 제32조의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 원칙(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사업 기간) '23. 2. ~ 12.
- (소요 예산) 550백만원
- (조사 내용) 「장애인등편의법」 상 대상시설이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 (조사 방법) 조사요원* 대상시설 방문 및 현장조사 실시
 - * 지자체에서 선발·채용된 조사요원 현장 방문조사(사전 교육 이수자로 약 2,000여명 추정, 조사요원 인건비 지자체 부담(약 180억 추정))

2) 향후 실시계획

- 2025년 법적 의무 대상 외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가
능여부 검토중
- 2028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실시 예정